■ 법률 칼럼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한인들이 영주권을 가장 많이 취득하는 루트는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입니다. 그리고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오늘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는 경우를 상정하여 점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입국이 세관을, 이민을 거친 합법입국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영주권 신청인은 먼저 본인이 비이민비자 또는 비자면제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 세관과 이민을 거치지 않고 밀입국하신 경우는 601A 면제 과정을 통하여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다음 시간에 자세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 신분 유지 –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입국만 하셨다면 현재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 영주권 신청인 미국에 최근에 입국하신 경우는 90일 규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신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분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 시 이민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셔야 안전합니다.

4. 시민권자 배우자의 재정 보증 능력 – 시민권자 배우자는 이민청원서와 재정 보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개인세보고서 Form 1040으로 재정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개인세 보고서상으로 total income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를 찾으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셔야 합니다.

5. 영주권 신청인의 범죄 기록 –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혹시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연관이 되신 적이 있으신지를 점검을 하시고 만약 범죄를 체포, 기소,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는 반드시 범죄 관련 케이스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범죄행위가 심각한 경우 즉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 있는 범죄(Moral Turpitude Crime)인 경우는 601 면제를 통해서 면책을 받으셔야만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 신청인이 기소가 되신 경우가 아니라도 불법행위에 연관된 경우, 예를 들어 프로디 학원 관련 자 분들도 601 면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용서가 되는 부분은 불법체류의 문제이지 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LA Office: (213) 232-1655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장례준비서 1: 임종 및 장례 시설과 장례 전문가

현재 미국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약 75%가 병원 호스피스 혹은 양로시설에서 생을 달리한다. 그런데 어디서 유명을 달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처리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

■ **병원:** 임종하면 병원에서 준비된 장의사 유무를 묻는다. 장의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면 된다. 혹시 약속된 장의사가 없다면 곧 정하여 알려 주겠다고 하면 된다. 며칠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 병원에서는 시신을 병원 안치실로 모시고 간다.

■ **호스피스, 양로시설:** 호스피스와 양로시설에는 영안실이 없다. 그러므로 임종하면 빨리 모시고 나가기를 원한다. 가족은 장의사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 **집:** 집에서 사망하면 즉시 911에 전화를 해야한다. 경찰과 구급대원와 응급차가 온다. 경찰은 이 죽음이 사고사인지 병사 혹은 자연사인지 확인한다. 구급대원은 소생시술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하고 검사한다. 망자가 지병이 있어 의사의 관리하에 있었다면 카운티 검시관의 허락하에 장의사로 옮겨간다.

만약 호스피스의 간호를 받고있었다면 911 전화를 하지않고 호스피스오피스 혹은 호스피스 책임 간호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사망이 판정되면 장의사에게 연락하여 모시고 가도록 한다. 이때 연락할 장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면 경찰이 임의로 결정하여 진행시키기에 평소에 장의사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오랫동안 의사의 검진이 없었거나 사인이 의심 가는 경우에는 카운티 검시소로 데려가 부검을 한다. 부검을 피하도록 가능한 정기적인 의사의 검진이 필요하다.

■ **이외의 장소:**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검시소로 간다.

한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 **장의사(Mortuary):** 시신을 영안실에 모시고 예식을 위하여 시신을 준비 시키는 장소. 장례를 할 수 있는 장소이면 Funeral Home 이라고도 한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장례지도자(Funeral Director) 라이센스를 소유하면 장의사(Mortuary)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장례지도자(Funeral Director):** 장례지도자는 미국 장례대학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치고 주정부의 라이센스를 소유한 자이다. 미국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장례대학 교육이 없어도 일반 전문대학의 학위와 주정부 시험을 통과하면 장례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도 장례지도자의 훈련 하에 예식을 인도할 수도 있다. 예식인도자(Service Director)라고도 한다.

■ **시신방부사(Embalmer):** 시신방부사는 2년 혹은 4년(미국 주마다 조금씩 다름) 장례대학을 졸업하고 2년의 훈련 기간 후 국가고시와 주정부의 시험을 합격해야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 / 어지럼증 / 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뻐근한 통증 / 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 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쥐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Yoon Chiropractic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 539. 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